

협회와 조합의 기능과 역할



이 호 검 교수
(농협전문대학)

경제구조가 다양화됨에 따라 우리 주변에는 각종 사회 경제적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단체들이 늘어나고 있다. 농축산 분야의 경우도 「협회」, 「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등의 여러 종류의 단체들이 조직, 운영되고 있어 각 단체의 기능이 서로 어떻게 다른지 일반인들에게 혼동되는 경우가 없지 않다. 따라서 농업 단체들 가운데 흔히 볼 수 있고 조직과 활동 면에서 대표성이 크다고 할 수 있는 「협회」와 「조합」에 대해 각기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르며 기능과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기로 한다.

1. 성격과 기능

협회와 조합은 다같이 구성원의 공동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한 인적 단체라고 할 수 있으며, 양자(兩者)를 뚜렷하게 구분하여 규정한 문헌을 찾아보기 어려우나 그 성격이나 기능상으로 차이가 있다.

협회는 일반적으로 동일 업종이나 직종에 있는 개인이나 단체가 구성원이 되어 단결과 연대,

권익증진 등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직을 지칭한 것이며 민법이나 상법상 협회에 대해 특별히 명시한 규정은 없다. 농축산 분야의 경우 전체 농업인을 포괄하여 권익을 대변하는 단체도 있으며 양돈, 양계, 과수 등의 특정 업종 종사자의 공동 이익을 위해 각각 설립된 「협회」명칭의 단체들이 많이 있다. 법 인격을 부여받기 위하여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 설립 목적과 명칭 등에 대해 정부의 설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 경우 민법상의 비영리 사단법인에 속한다.

한편 조합은 민법상으로는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할 목적으로 결합한 조직'이라고 되어 있으나, 민법상 조합 외에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농업협동조합, 축산업협동조합 등과 노동조합도 조합명칭을 사용하고 있어 통일된 개념정립 또한 어렵다. 따라서 여기에선 그 규모와 사업 활동면에서 비중이 크고 전 세계적으로 조직이 발달되어 있는 협동조합을 대표적인 예로 설명하고자 한다.

소위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공통의 경제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이 결성한 조직'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협동조합 역시 민법상 사단법인에 속하지만, 조합원 공동의 사업을 경영함으로써 공통의 목적을 달성한다는 점에서 그 기능이 협회와 구별된다.

요약컨대 협동조합은 사업체적인 성격을 갖는 반면 협회는 구성원의 단결과 연대를 위한 협의체 성격이 강한 단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들 조직이 그 기능을 효율적으로 발휘하기 위하여는 서로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올바른 인식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2. 상호 협력하고 보완하는 관계정립 필요

협회와 협동조합의 역할과 관련하여 세계 각국의 농업관련 단체들의 조직현황을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나타내고 있다.

첫째, 국가의 경제발전 단계가 높아질수록 각 권익단체의 자주적인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조직이 업종별로 또는 기능별로 전문화되어 있다. 또한 서구 선진국들은 사업체적 성격의 협동조합과 권익운동 중심 단체간의 역할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져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둘째 집단화와 규모의 이익을 위해 각 조직들을 광역단위 그리고 전국단위로 연합하는 연합조직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국내 뿐 아니라 국제적인 홍보, 판촉활동을 적극 전개하고 있다. 유럽연합(EC)의 경우 회원국 농민의 이익을 위해 조직된 「EC농업단체연합회」(COPA)와 「EC농업협동조합연합회」(COGECA)는 각각 국제단위로 연합한 대표적인 협회 및 협동조합 조직이며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미국의 대두협회, 사료곡물협회 등은 자국 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비롯한 수출 대상국에 진출하여 자국

농산물의 홍보 및 판촉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점은 특기할 만 하다.

셋째, 협동조합의 경우 세계적인 개방화추세에 따라 사기업과의 경쟁에 대응하기 위해 주식회사와 같은 기업적 요소를 조합경영에 도입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동조합 사업의 많은 부분이 여러 형태로 설립된 자회사에 의해 운영되고 있으며, 이는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등 유럽지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농업관련 단체들이 WTO의 출범과 시장개방 등 무한경쟁에서 생존하고 구성원 공동의 이익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자구대책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 농업관련 단체들의 경우 지난 80년대까지만 하여도 그 설립과 운영을 제약하는 법규 조항과 권익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많이 존재하였다. 그러다 보니 이들 단체가 운영면에서 자율성과 독립성을 침해받는 경우 또한 빈번했다. 더욱이 유사한 업종의 협회나 조합 등의 단체들은 구성원들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많아 단체간에 그 대표성과 정통성을 놓고 갈등을 빚는 일이 종종 발생하기도 하였다.

그동안 우리 사회 전반의 민주화와 자율화 추세에 따라 과거와 같은 과도한 규제는 이제 거의 자취를 감추어 자율성이 확보 되었으며, 각 조직의 기능과 역할이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 유사한 분야의 각 조직이 상호 보완하면서 서로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면 구성원 공통의 목표를 훨씬 더 효율적으로 추구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금년부터 쌀과 쇠고기를 제외한 전품목에 대해 시장개방을 하게 됨에 따라 우리 농축산 분야의 단체들도 서로의 기능과 역할을 바로 인식하여 회원 및 조합원의 이익을 추구하고 농축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데 모든 노력과 지혜를 동원해야 할 것이다.

